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5월 10일 01시 09분



상품권안내

자주물는질문(Q&A)

상품권 이용규약

판매대행점조회

사용가맹점조회

공지사항

## 목포사랑 상품권 이용규약

### ■ 제1조(총칙)

상품권의 발행자인 목포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.

### ■ 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목포사랑 상품권으로 한다.

### ■ 제3조(상품권의 사용방법)

사용자는 목포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.

### ■ 제4조(사용자 준수사항)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.
  -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목포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상품권이 위조·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
-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.

### ■ 제5조(유효기간)

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### ■ 제6조(상품권의 환급)

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%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.

### ■ 제7조(가맹점과의 관계)

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,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.

### ■ 제8조(상품권의 분실)

상품권을 분실,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.

### ■ 제9조(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.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